

1.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가. 개정 이유

- '11년 사업타당성조사(이하 '사타')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된 기준금액 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
- '11년 대비 방위력개선비(2배)와 500억원 이상 사업수(1.35배)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 방위력개선사업의 79%가 사타 대상사업
 - * 500억미만: 21% / 500~1,000억: 11% / 1,000억 이상: 68%
- 최근 사타 요청 대비 수행률은 약 55% 수준으로,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첨단전력 사업 등의 착수 지연 가능성 상존
 - * '24년 35건 신청 18건 수행 (51.42%), '25년 23건 신청 14건 수행(60.86%)

나. 개정 내용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 신·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2 (사업타당성조사) 법 제 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2 (사업타당성조사) ----- ----- ----- -----무기체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하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다. 입법효과 : 사타 기준금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무기체계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1,000억원인 사업은 사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로 신속한 전력화 추진 가능

2.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가. 개정 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모법이 개정('26.3월)되어, 구비서류·요건 등 관련 절차 구체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 신·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산업체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승인 대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3. 승인 대상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 4. 승인 대상자의 본국 및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승인 대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과급효과 2. 승인 대상자의 국적, 경력,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 특이사항 3. 승인 대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 4.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상 보안대책의 적절성 5. 「방산기술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③ 방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제1항에 따른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특정 군사기밀 또는 핵심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2. 직무 성격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자의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3. 주기적인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점검 실시 4.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의 즉각적인 신고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방산업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

다. 입법효과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세부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산기술 유출 등에 보다 유의하고,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